

성남 도시관리계획(도로·공원·지구단위계획)결정
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- 1. 성남 도시관리계획(도로, 공원,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기에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2.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729-3333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25. 6. 23.

성 남 시 장

가. 도시관리계획(도로, 공원) 결정(경미한변경)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1018호선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2	1018	8	국지 도로	429	중1-21	중2-97	일반 도로		건교부제410호 (’95. 12. 22)	기점 및 종점 가각 조정
변경	소로	2	1018	8	국지 도로	429	중로1-21	중로2-97	일반 도로		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: 탑골근린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25	탑골	근린공원	야탑동 195번지	358,629.6	감)546	358,083.6	건교부고시 제238호 (’ 95. 07. 07)	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사유서

(도로)변경 내용	(공원)변경 내용	변경 사유
• 소로2-1018호선의 기점 및 종점부 가각 조정 - 기점, 종점 가각 조정에 의한 도로부지 면적 변경: 3,430㎡ → 3,976㎡ (증 546㎡) - 연장 및 폭원 변경없음	• 도로 가각부 확장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 축소: 358,629.6㎡ → 358,083.6㎡ (감 546㎡), 0.15% 축소	• 중로1-21호선 및 중로2-97호선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소로2-1018호선의 기점 및 종점부 가각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나.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조서(경미한변경)

○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조서

- 교통(도로)시설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와 동일
- 공간(공원)시설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와 동일

※ 분당지구단위계획(기반시설: 교통, 공간) 경미한변경 외 변경사항 없음

다. 사업시행지의 위치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97-7번지 일원

라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)
- 명칭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1018호선) 가각 정비사업

마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성남시장(분당구청장)
- 주소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(여수동)

바. 사업의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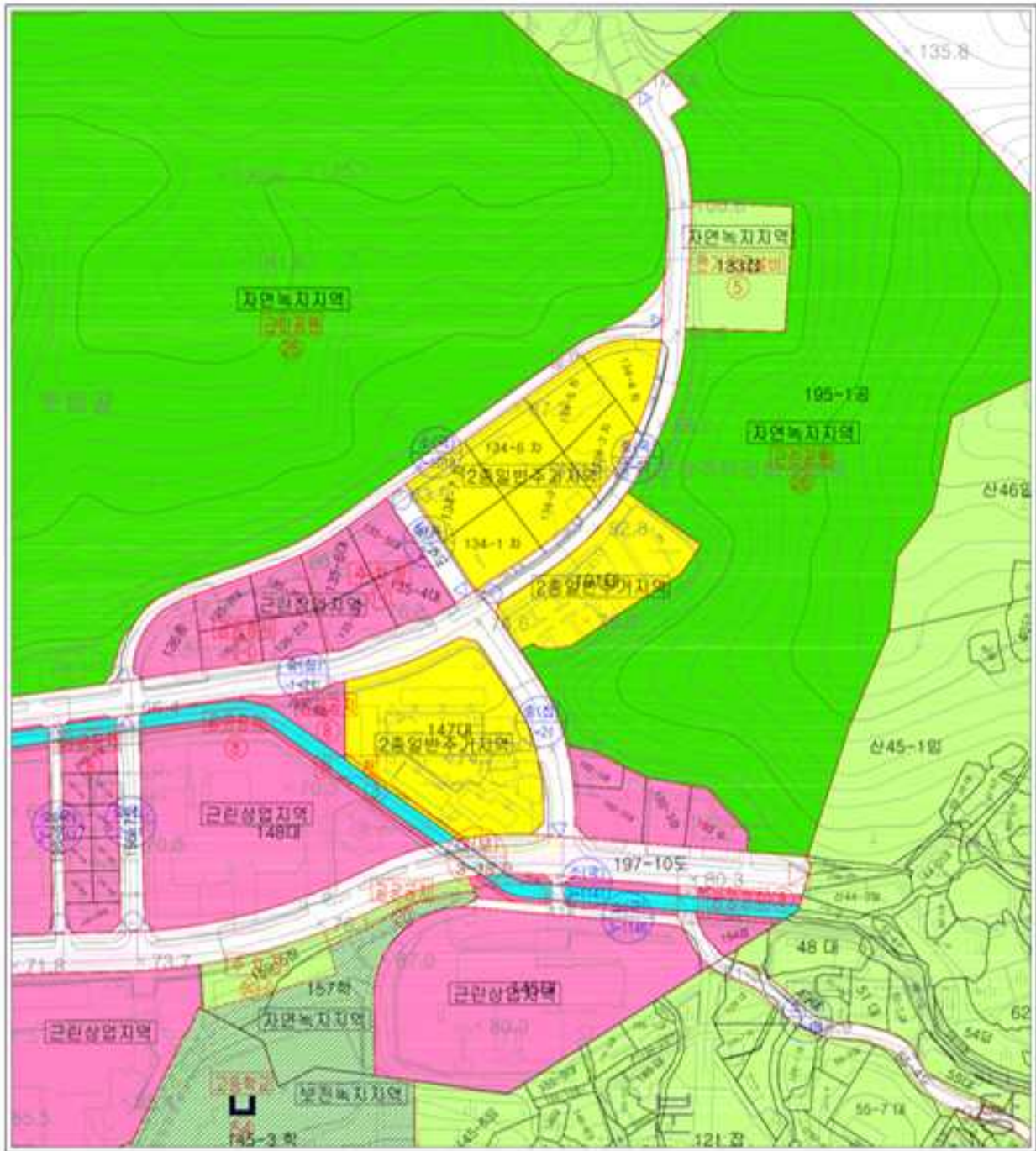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결정	소로	2	1018	8	집산 도로	429	중로1-21	중로2-97	일반 도로		건교부제410호 (95. 12. 22)	기점 및 종점 가각 조정 A=512㎡
시행	소로	2	1018	8	집산 도로	88	중로1-21 (시점부가각)	중로2-97 (종점부가각)	일반 도로			

사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: 실시계획인가일 ~ 2025. 12. 31.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토지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: 생략

자. 지형도면고지도:불임

[붙임]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고시도



구분	지번	면적	비고
자연녹지지역	134-6	1,234.5	자연녹지지역
자연녹지지역	134-1	1,234.5	자연녹지지역
자연녹지지역	147	1,234.5	자연녹지지역
자연녹지지역	148	1,234.5	자연녹지지역
자연녹지지역	157	1,234.5	자연녹지지역
자연녹지지역	145-3	1,234.5	자연녹지지역
자연녹지지역	195-1	1,234.5	자연녹지지역
자연녹지지역	197-10	1,234.5	자연녹지지역
자연녹지지역	48	1,234.5	자연녹지지역

